



부산남구공보

제 1258호 2023.11.15.(수)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선 람	기 관 의 장

공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발행·편집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48452)
☎ 607-4068 / FAX 607-4919

규 칙

- ▶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960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961호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공 람									
--------	--	--	--	--	--	--	--	--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960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
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로,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
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자치회”로 한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제7조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자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은 수강료의 정수금액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회”를 “자치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961호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2. 지원 시기, 지원범위, 방법 등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라 한다)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6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제4조제1항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제4조제2항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제8조(지원절차 안내 등) ① 책임관은 제7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이 종료된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3조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진행상황 보고)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3개월마다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3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5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_____	직 급 : _____ 성 명 : _____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_____)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 지원		
징계의결요구개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요구사유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신청인 _____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약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 : _____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_____	직 급 : _____	성 명 : _____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_____)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신청인 _____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약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 : _____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